



의안번호	제호
회의 연월일	2021. . . (제회)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징계절차 중인 공무원의 퇴직 관리를 강화하며,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 감경 제한 및 징계부가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 제고(안 제6조)

징계심의 시 양성(兩性)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별지 제1호의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별지 제1호의2)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서 서식 보완

라.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명확화(별지 제3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과 달리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결서 서식 보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개정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협의 당시)		(현재) (협의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항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해당함, □해당 없음)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해당함, □해당 없음)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 및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기타():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1. 징계등 심의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2. 의결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등을 기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으로 위촉해야 한다. <후단 신 설></u>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1160